

7 강사 기준 및 관리

가. 강사 자격 기준

1) 사회복지영역(인권, 윤리, 정책, 실천, 행정, 조사)

○ 교수 :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

-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
-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·석사·박사 학위 중 두 개 학위 이상 소지자
-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

○ 실무자 :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

-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
-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 후
 - 사회복지사업 현장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재직자 또는
 - 사회복지사업 현장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
- ※ 사회복지사업의 현장실무경력 :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, 시설, 기관 및 단체에서의 경력

○ 공무원 :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6급 이하 :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5년 이상인 자
- 5급 이상 :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 재직자

[인권영역 강사 기준]

※ 단, 인권영역의 경우 사회복지영역 강사기준 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강의 가능

- 인권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자
- 인권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
-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
-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양성교육을 수료 후,
 - 인권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재직자
 - 인권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

[자살예방 게이트키퍼⁹⁾ 양성과정 강사 자격 기준]

-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살예방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며 게이트키퍼 강사

[인권영역 강사 기준]

-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
-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자살예방관련 업무에 재직 중인 자

[성인지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 자격 기준]

-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자
-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
-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양성평등교육 전문 강사인 자
-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5년 이상이며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양성평등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

2) 기타영역(특별)

- 사회복지영역 강사 자격기준
 - 기타 : 아래의 기준 등에 의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인정하는 자
 -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
 -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
 -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
 - 특정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
 - 기타 국가기관(공공기관) 등으로 해당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
- ※ 강사 및 실시기관은 해당 교육계획서 내용에 부합하도록 충실하게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, 보수교육 강의 외의 목적으로 교육시간을 이용할 수 없음

9)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자살위험신호를 인지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사람